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(나경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24

발의연월일: 2025. 3. 27.

발 의 자: 나경원·김기현·조배숙

김은혜 • 박성훈 • 김미애

배준영 · 장동혁 · 정점식

이달희 · 김석기 · 최보윤

송언석 · 김선교 · 최수진

박덕흠 • 서천호 • 고동진

인요한 · 김종양 · 이종욱

이인선 · 임종득 · 박수민

강선영 • 곽규택 • 김 건

박대출 • 김민전 • 박상웅

김장겸 • 백종헌 의원

(329])

제안이유

현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 부지 내에는 제1·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,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우리 서해를 수호하며 겪은 주요 전투의 역사를 조명하는 '서해수호관'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, 군사시설 내에 있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.

또 서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, 단순한 전시 공간을

넘어 법적 기반을 갖춘 기념관을 설립하여 그 역사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.

이에 '서해수호기념관'을 설립하여 서해수호를 위한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, 그 정신과 역사를 후대에 올바로 계승·전승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서해수호기념관을 건립하여 서해를 수호하다 희생된 군인 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고,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서해수호기념관을 법인으로 하며, 정관으로 그 장소와 설립 목적 등을 정하도록 함(안 제2조 및 제5조).
- 다. 서해수호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관한 자료의 전시 및 보존, 국민교육 등을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로 정함(안 제6조).
- 라.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서해수호기념관에 이사회를 둠(안 제11조).
- 마. 서해수호기념관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8조 및 제19조).
- 바.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의 지도·감독을 받도록 함(안 제21조).

법률 제 호

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서해수호기념관을 건립하여 서해수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군인과 국민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 고, 이를 통해 온 국민이 자유와 평화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되새기 며,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다.
- 제2조(법인격) 서해수호기념관은 법인으로 한다.
- 제3조(설립) 서해수호기념관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.
- 제4조(사무소) 서해수호기념관의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는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5조(정관) ① 서해수호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목적
 - 2. 명칭
 - 3.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
 - 4.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
 - 5. 조직에 관한 사항

- 6. 임직원에 관한 사항
- 7.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8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10. 공고에 관한 사항
- ② 서해수호기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(認可)를 받아야 한다.
- 제6조(업무) 서해수호기념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서해수호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관한 자료의 전시 및 보존
 - 2. 국민의 안보관 정립을 위한 국민교육
 - 3. 국방 관련 세미나 또는 학술회의 개최
 - 4. 서해수호기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
 - 5. 서해수호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
 - 6. 서해수호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
 - 7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 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 - 8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
- 제7조(임원) ① 서해수호기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
- ② 관장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서해수호기념관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임원추천위원회"라 한다)가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임명한다.
- ③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- 1. 국가보훈부의 보훈 선양을 담당하는 국장
- 2.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한 국회의원 4명
- 3.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8명 이내
-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 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⑤ 관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- 제8조(임원의 임기)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7조제 3항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다.
- 제9조(임원의 직무) ① 관장은 서해수호기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

- 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.
- ④ 감사는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해수호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「국가공무워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, 제35조제2항·제 3항,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- 제11조(이사회) ①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 의결하기 위하여 서해수호기념관에 이사회를 둔다.
 -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 -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, 이사회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 선임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장의 요구나 재적의사 3분의 1 이상의

- 요구로 소집하고, 이사회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.
-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제12조(사무처) ①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해수 호기념관에 사무처를 둔다.
 -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13조(보조금 및 출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 - ②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해수호기념관에 돈이나 그 밖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 할 수 있다.
- 제14조(국·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서해수호 기념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 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 나 공유재산을 독립기념관에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주거나 관리를 맡길 수 있다.
- 제15조(관람료 및 이용료) ① 서해수호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
 - ② 서해수호기념관은 자료나 시설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.
- 제16조(회계연도) 서해수호기념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- 제17조(차입금) 서해수호기념관이 장기 차입을 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8조(예산의 편성 등) ① 관장은 회계연도마다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,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.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-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19조(결산서의 제출) ① 서해수호기념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,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(이하 "회계법인"이라 한다)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다.
 - ② 서해수호기념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.

- 1. 재무제표(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)와 그 부속서류
- 2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0조(자료제공의 요청) ① 서해수호기념관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 체, 교육기관,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·복사·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 야 한다.
- 제21조(지도·감독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업무에 대하여 서해수호기념관을 지도·감독한다.
 -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서해수호기념관에 그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해수호 기념관의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.
- 제22조(「민법」의 준용) 서해수호기념관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설립준비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서해수호기념관의 설립에 관한

-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해수호 기념관설립위원회(이하 "설립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- ② 설립위원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된다.
- ③ 설립위원회는 서해수호기념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서해수호기념관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- ⑤ 설립위원회는 서해수호기념관의 관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사무를 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-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,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설립 당시의 관장 임명) 서해수호기념관의 설립 당시의 관장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.